

기 안 용 지

제 1 앤 내부결재

1. 강남 구청장으로부터 면접과 같이 도시 계획
시설(시장) 결정 요점이 있어 우리시 제2차 도시 계획
위원회 속개 회의(판. 6. 28)에 상정 심의 가결되었기
도시 계획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
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코자 합니다.

첨부: 판례서류 1건

제2장 고시yan

서울특별시 고시 제 3호

도시계획시설(시설) 결정 고시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4장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1203-25(2-1)A(집)
1981. 12. 18승인

정직 질서 창조

제 33-41 1985. 2. 6.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국 수원
계획과와 강남 구청 도시 경비과 및 시민 용사실에 비
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1

서울특별시장

◦ 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칙	규모(㎡)	비고
시설	시장	강남구 대치동 629-9번지 1층	3131.쓰	

◦ 결정도면: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 생략)

제3안

수신: 건설부장관

참조: 도시시설계획과장

제목: 같음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별첨과 같이
결정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: 고시문서본 및 도면 각 1부

제4안

수신: 총무처장관(시: 공보관)

수신: 시(국)장

제목: 관(시)보 개재 의뢰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에 대하여 별첨
과 같이 결정되었기 관(A)보 개재 의뢰합니다.

가. 개재구분: 고시

나. 개재건명: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

다. 법적근거: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

시행령 제6조

라. 개재내용: 결. 첨.

결재

첨부: 고시문 사본 2(1) 부



제5안

수신: 강남구청장

참조: 도시정비과장

제목: 출 읍

1. 귀구 관내 도시계획시설(시장)이 결집과 출이
결정되었기 둘로하니 도면 정리 및 판례과에 통보
하여 도시 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

2. 도시 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승인, 출은
법 제14조의 2 및 출은법 시행령 제10조 2의 규정
에 의한 여객별 집행 계획을 수립 공고후 보고도록 할 것.

3. 사업시행 허가시에는 타당에 관계되는 사항에
대한 조치를 이행하고 교통 분석의 지침 여부를 참안
시행허가로 할 것.

첨부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

제6안

수신: 수신처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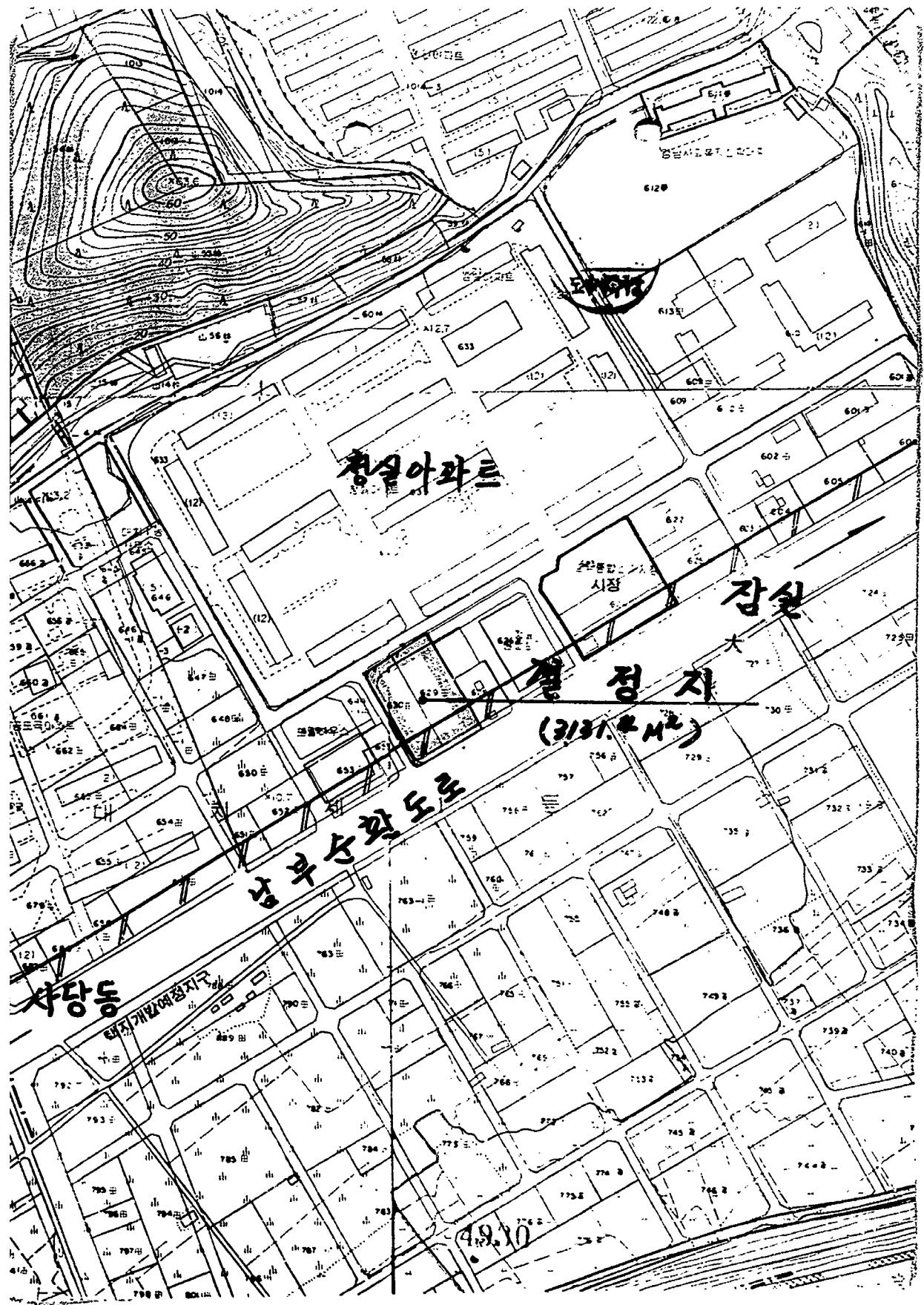
발신: 과장

제목: 출 읍

1.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시장)이 결집과
출이 결정되었기 둘로하니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
바랍니다.

첨부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

수신처: 상공과장 도시계획과장 괄



'85.6.28.

도 시 계획 위원회 회의록
=====

(2차 위원회 속개 본회의)

서기	기록자	사실자	사실자	사실자	공 과장	공 과장
Am	24	24	24	24	32	32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

4931

○ 일 시 : '85.6.28 15:00-17:00

○ 장 소 : 소회의실

○ 안 건 :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26건

○ 참석위원

위 원	이 광 노
"	신 동 호
"	오 휘 영
"	황 명 찬
"	안 범 수
"	지 흥 원
"	장 지 남
"	장 현 익
"	김 인 식
"	최 종 무
"	정 영 섭
"	별 상 승
"	이 동
간 사	도시계획과장
서 기	도시행정과장

○ 불참위원

위 원장	김 진 원
위 원	김 경 동
"	노 용 의
"	김 수 근
"	도 철 옹
"	안 영 배
"	여 홍 구
"	이 동 배
"	김 재 탕

= =

심) 결 과 요 약

제 26 안	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	
	◦ 성동구 광장동 120, 76-4일대	
	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 40,652m ²	가 결
	자연녹지지역 → 준주거지역 6,918"	가 결
제 27 안	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	
	◦ 성동구 육수어린이공원	가 결
제 16 안	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결정	
	◦ 동작구 신대방동 351-5 도로 폭 축소	가 결
제 28 안	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변경 결정	
	◦ 도봉구 노원교-시계간 도로 15건	소위원회의임
제 29안	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및 변경 결정	
	◦ 강동구 암사수원지 진입로(3건) 결정	소위원회의임
	◦ 성동구 광장동 259-7 도로변경	가 결
	◦ 성북구 종암동 29-56 도로폐지	"
제30안	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	
	◦ 강남구 대치동 630의 1필지	가 결
제31안	동작구역 제2지구 사업계획변경	가 결
제32안	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변경	
	◦ 강남구 방배동 438일대	소위원회의임

- 위 원 장 의견 없으 원안대로 가결 하겠습니다.
- 일 동 동의(가결)
- 성북구 종암동 29-26 (도로 폐지)
-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 (심의안에 의함)
- 위 원 장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 하겠습니다.
- 일 동 동의(가결)
- 제 30 안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
- 강남구 대치동
-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(심의안에 의함)
- 위 원 장 가결될 경우 의견청취시 주민의견과 같이 지하1, 지상4층으로 건립이 가능합니까?
- 김인식위원 주민의 요구 사항에 따라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.
- 이동의원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인데도 구청산업과의 의견은 지역내 시장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네요
- 위 원 장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시 검토 반영도록하고 도시계획 결정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?
- 일 동 동의(가결)
- 제 31 안 동자동 구역 제2지구 사업계획 변경
- 재개발과장 제안설명 (심의안에 의함)
- 동진제강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규모상 수도권정비심의대상에서 제외 코자 규모를 축소하는 것입니다.
- 위 원 장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 하겠습니다.
- 일 동 동의(가결)
- 제32안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변경
- 강남구 방배동